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785호
- 다. 제출일자: 2020. 8. 12.
- 라. 회부일자: 2020. 8. 21.

### 2. 제 안 사 유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환경 분야 체험·학습·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물의 모델로서,
- 에너지제로건물과 전시관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복합건물로서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전시·교육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상암동 1535-3)
- 규 모: 연면적 3,777m<sup>2</sup>(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3,104m<sup>2</sup>
- 시설활용: 에너지·환경 분야 체험·학습·소통의 장으로 활용
- 공간구성

구 분	용 도	공간활용 계획
1층	에너지드림관	- 에너지 의미와 역사, 서울의 신재생에너지(체험) - 드림센터 적용 요소기술 전시 - 블랙아웃 및 휴먼에너지 체험
2층	기후변화배움터	- 기후변화 전시관(기후변화 전시·교육 콘텐츠 운영)
3층	커뮤니티관	- 체험형 환경교육 및 컨퍼런스 - 휴게공간(북카페)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3년(2021. 1. 1.~2023. 12. 31.)
- 위탁업무
  - 전시·홍보관 운영 및 관람객 유치·확대
  - 방문객 관람안내 서비스,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녹색기술 관련 전시회 기획 및 개최
  - 녹색기술 관련 시민참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개발
  - 에너지·녹색기술 관련 회의 유치 및 산학연 교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사업비: 1,276백만원(2021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2012. 2. 8.~2012. 12. 31.(에너지관리공단)
- 2차: 2013. 1. 1.~2014. 12. 31.((사)녹색교육센터, 에너지관리공단)
- 3차: 2015. 1. 1.~2017. 12. 31.((사)녹색교육센터, (주)이젠파트너스)
- 4차: 2018. 1. 1.~2020. 12. 31.((사)녹색교육센터, (주)이젠파트너스)

##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시 직영시 전문성 부족과 운영인력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의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됨
- 또한, 전시·홍보·환경 분야 체험, 시설관리, 에너지라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무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의 제4차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2020.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함.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위탁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재위탁)추진계획('20. 6.)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 건물과 전시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전시·교육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나. 검토 의견

###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sup>2)</sup>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sup>3)</sup>한 바 있음. 이후 심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 심의를 통해 ‘적정’ 통보<sup>4)</sup>를 받은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심의사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재위탁(공모)	3년	조건부 적정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상의 문제점 요약

- **조직 및 인력 운영:** 현재 민간위탁은 (사)녹색교육센터와 (주)이젠파트너스의 공동수급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센터장 아래 시설연구팀 6인, 교육팀 3인 및 총무팀 3명 등 총 3팀 12인제로 운영 중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추진 근거, 센터 현황, 위탁 운영 성과 평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8531, 2020. 7. 13)

4)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적정 후속조치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8899, 2020. 7. 27)

다만, 교육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리, 대외협력, 교구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평균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재정 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률은 98~99%로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분기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계획과 집행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연말에 예산 집행이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수는 2018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50% 이상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중고생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운영 및 인식 확산**: 태양광 발전량은 전기 소비량의 182%(2019년 기준)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aving System)의 미가동으로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위탁 공동수급 관련**: 현재 두 수탁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공동수급 체제에서 업무 추진 시 수탁기관 간의 갈등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지출 관리가 어려운 점<sup>5)</sup> 등으로 인해,  
  
재위탁 시 공동수급을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수탁 협약을 구체화 하여 업무 분담과 관리 통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5) 민간위탁금 환수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2017부패8381호)



## □ 검토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소관 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